

「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 폐지조례안」
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2. 11. 15(목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2. 11.. 26(월)
- 다. 상정일자 : 2012. 12. 20(목) 제191회 평창군의회 정례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문화관광과장)

- '92년초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해결 및 마을의 수입증대와 환경보전을 전제하여 운영되어 온 마을관리 휴양지는 청소비 징수 시비 등으로 운영상 문제점이 도출됨.
- 이에따라 우리군에서는 군의 관광이미지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마을관리휴양지 지정운영 및 수수료 징수를 하지 않고, 읍면에서 직접 관리 하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(2009.10.16)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장동기)

- 본 조례안은 청정 산간계곡의 환경보전과 마을 수입증대를 위해 운영되던 마을관리 휴양지가 2008년부터 운영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마을관리휴양지조례 폐지조례안 1부